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종자산업
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008호

붙임 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08호

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종자산업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제1호 중 “특산품육성과장, 미래농업과장”을 “종자업무 담당 부서장,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여수시의회 의원 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	제3조(위원회의 설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- <u>특산품 육성과장, 미래농업과장</u>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4. <u>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종자업무 담당 부서장,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여수시의회 의원 2명</u>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